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외 2분기 동향

2024.04 카드뉴스

# 리더 메시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4월 Brief』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등을 소개하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개최’** 등의  
주요 보도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센터에 접수된 질의응답 사안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등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Brief를 통해 2분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 가속화

이사회는 기후행동이 장단기적으로 고려되도록 지금 행동해야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17개국 230명의 이사회 의장 대상 인사이트 조사 ('22-'24)

###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6가지 질문

기후 아젠다를  
비즈니스 전략에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후변화에 필요한  
투자과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와 이해관계를  
관리하면서 규제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사회에 광범위한  
기후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기후 문해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가?

### 변화를 지지하기 : 미래의 이사회 의장을 위한 조언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중  
협력자를 찾아 공동 발전방안 모색



핵심 마인드 수용



생태계와 함께 발전하고  
행동과 목표에 대해 소통



회사가 자신감을 갖고  
지속가능성 여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기후 아젠다 지지



목적, 전략, 임원 선임의  
방향을 일치



지속적인 학습문화 조성

#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감사품질센터, 글로벌 감사위원 266명 대상 '24년도 감사위원회 중점과제 등 서베이 실시

## 2024 감사위원회 중점과제는?



## 감사위원회 실무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 회의시 감사위원의 토론·참여 증가 :
  - 모든 사전자료 숙지 후 회의 참석, 열린 대화와 솔직한 토론
- 사전자료 품질 향상 :
  - 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사전자료 검토시 다른 위원의 질문에 답하도록 담당자 지정
- 회의 발표의 품질 향상 :
  - 발표를 할당시간의 3분의 1로 제한, 나머지는 토론·질문시간으로 남기기

# 기술 거버넌스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다

기술이 거버넌스의 여러 측면에 통합됨에 따라  
이사회는 기술 거버넌스 영역의 역량 확보 필요

## 기술은 왜 중요한가?



### > 발전 속도

빠른 기술발전 속도는 리스크를 더 자주 평가해야 할 필요



### > 신뢰

기술은 이사회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강화



### > 디지털 기준 높이기

이사진에 대한 기술 숙련도 기대치를 높일 것을 권장

## 기술 트렌드의 시사점

### 변화하는 것

### 변화하지 않는 것

#### 상호작용

• 공간 컴퓨팅과 산업 메타버스로 초점 변화

• 몰입형 인터랙티브 기술경험에 초점

#### 정보처리

• AI 도구 상품화부터 기업 환경 속 AI 실제 적용까지 변화

• AI 역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

#### 연산능력

• 특수 하드웨어 등장은 이진수 연산을 넘어선 변화

• 복잡한 작업을 위해 고급연산 기능과 인프라 진화 요구

#### 기술 비즈니스

• (기술인재 선별 · 육성부터 생산성 향상 방식까지) 개발자 경험 활용 방향의 변화

• 경쟁우위 관점에서의 인력의 중요성

#### 사이버와 신뢰

• 합성 미디어\* 관련 과제의 부각

• 사이버와 신뢰의 관계는 진화중

#### 코어시스템 현대화

• 기술적 웰니스 접근방식으로 변화

• 기술 건전성의 발전은 인프라 업데이트의 가치 확인에 유용

\*AI에 의해 또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

## 이사회 거버넌스 및 전략에 대한 시사점

- 빠른 기술발전의 속도로 인해 리스크와 기회를 더 자주 평가 필요
- 기술발전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 이사회 리스크 및 기회 전략이 바뀔 수 있음
- 최신 혁신기술의 도입이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입평가 필요

#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하고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개최 목적

- 한국시장 대표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24.2월 발표한 기업밸류업 지원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 개최(4/4)

## 주요 내용

-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
-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정부 유관기관 지원이 **지속·일관된 정책기조**로 유지 필요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 필요



이사회 역할 관련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 부여**하여 **적극·실질적 참여** 유도 필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 향후 계획

- 수렴의견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 사항 설계시 반영 예정

#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등

회계·배당은 기업-주주 연결 수단,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큰 의미

## 📢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부담 경감,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촉진하여 기업가치 제고되도록 정책 유도

-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 추진
- 기업 밸류업 표창 받는 경우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되도록 가점요소 반영,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추가 예정
-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 거쳐 2분기 중 확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하여 '25년 중부터 실제 적용 계획

## ✅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발표·시행

- 1,011개의 상장사는 정관 개정,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 해소
-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적극 추진 계획

## 🔍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 '24년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운영계획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제고하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위해 회계감독 기본방향·실시계획 마련

##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

### 👁️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 통한 대외 신뢰 제고

- 절차 명확화**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
-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 신설
- 방어권 보장** 위반사항 조기 정정시 인센티브, 조치예정사항 대면 설명

### 🎯 중대사건 역량 집중 통한 회계질서 확립

- 감시 강화** 고의적 위반가능성 높은 기업, 시장영향력 큰 기업 감시 집중
-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 확대, 핵심사항 위주로 신속히 업무 수행
- 시스템·디지털화** 디지털 감리 수행 위한 분석시스템 등 마련

### 🏠 회계업계 규율 확립 통한 감사품질 제고

- 등록요건 감독 강화** 통합관리 등 중점점검·부적격 회계법인 엄정 조치
- 맞춤형 감리** Big4 사전 감리기간 등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차등 감리
- 감사역량 제고**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감사역량 제고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Q. 공시팀 담당자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하며 보고서 작성시 유념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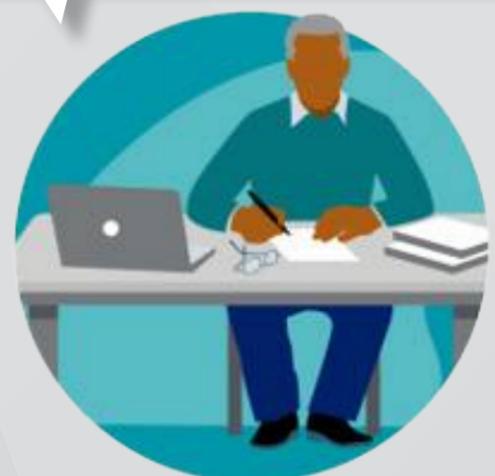
'24년부터는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FY2023 기준 자산규모(연결)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5월말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제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발표되어 제도개선 사항과 G20/OECD 지배구조원칙,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동향을 참고하고 실무적인 수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핵심 지표가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원칙 '준수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공시토록 하여 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 감사위원회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견 진술

Q. 최근에 신규 선임된 상장사 감사위원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수반되는 주요사안을 검토해야 하며, 법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사항에 의한 의견진술권	상법 제391조의2
정관위배·부당사항	상법 제413조
재무제표 등의 서류	상법 제449조의2
감사에 대한 보고	상법 제447조의4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외부감사법 제12조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시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서도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하는 사안에 충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동 모범규준은 감사위원 해임 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감사 · C레벨 등
- 일시** 2024년 6월 3일(월) 14:00 ~ 17:20  
- 16시 35분부터 네트워킹 세션 제공
-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문의** krccg@deloitte.com  
02-6099-4275

참가신청(클릭)



## 세미나 프로그램

대주제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시간	내용	담당
14:00~14:05	Opening Remarks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14:05~14:30	세션 1. 기초 강연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 (내부통제 중심으로)	박재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4:30~14:55	세션 2.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05	Break Time	
15:05~15:30	세션 3.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
15:30~15:40	세션 4. 딜로이트 글로벌 보드룸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2024년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5:40~15:50	Break Time	
15:50~16:20	세션 5. 패널 토론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유승원 좌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지은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혁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16:20~16:30	Q&A	
16:30~16:35	Closing Remarks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감사 및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16:35~17:20	네트워킹 세션	

\* 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hansukim@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